

[별표1](제5조 제2항 관련)

국가유산 전문가·법률전문가·이해관계자·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

구 분	항 목	자 격 및 기 준
국가유산 전문가	고고학	고고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(대학원)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·전문위원
	미술사학	미술사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(대학원)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·전문위원
	역사학	역사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(대학원)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·전문위원
	기타	위 분야 및 당해 유물 관련 분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해당 유물 혹은 유적에 조예가 있는 자
법률 전문가	법률학	1.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 2. 대학(대학원)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3. 정부법무공단(소속 변호사 포함)
이해 관계자		1. 당해 발견 유산 및 발굴 유산의 소유권 판정 신청자, 점유자, 관리자 2. 당해 발견 및 발굴 유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(단체 혹은 위임받은 자 포함)
관계기관		1. 당해 발굴 유산을 발굴조사 한 조사기관 2. 당해 발견 또는 발굴 유산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기관(박물관 등)

※ 소유권 판정 대상 유물(유적)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(국가유산/법률) 인원 선정